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65
----------	-----

2022. 1. 26.(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월 21일

-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용 의원)

가. 제안사유

-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그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권익에 대한 낮은 관심과 미흡한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임.

-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¹⁾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및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이 이에 해당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
-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어르신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정서적 활동 등이 포함되는 휴먼서비스로서 서비스 질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요원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25.2%,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는 16.0%, 성희롱 및 성적 신체접촉 등 성폭력을 경험한 자는 9.1%에 이르는 등 권익보호가 절실한 상황임.
-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의 소실과 신규 인력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장기요양요원 관련 조례는 현재 13개 광역 시·도에서 제정·시행중에 있으며, 미제정 시·도는 부산, 세종, **충북**, 경북 등 단 4곳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지원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상 불필요한 이중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함.
 -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노동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현장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및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설치, 기능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센터의 설치, 기능에 관한 조항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또한, 안 제10조(운영의 위탁)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²⁾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시·도는 총 5곳(서울, 인천, 경기, 경북, 경남)임.
 -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2023년 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센터의 운영을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하기 보다는 2023년 설치 예정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5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발 의 자 :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황규철

1. 제안이유

- 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그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권익에 대한 낮은 관심과 미흡한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임.
- 나.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2022. 1. 11. ~ 2022. 1. 16
- 다. 협 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법률·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규모 : 1개소, 종사자3명
 - 내 용 : 시설 운영비,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나. 추계 결과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 입(국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규모(1개소)	1	1	1	1	1	1
세 출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산출기준

- 운영비 : 19,000천원
- 사업비 : 51,000천원 (장기요양요원 지원)
- 인건비 : 130,000천원 (종사자3명)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50%, 도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서 :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비 등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국 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도비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일반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시·군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